
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함(안 제4조제5항 신설).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의 자녀돌봄 지원을 추가함(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화 실)